

## 군포시의회 CCTV 설치 행정예고

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23일

#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#### 1.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

- 군포시의회 청사 보안강화 및 시설의 안전관리,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과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

#### 2. 관련 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, 운영지침

#### 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1. 11. 23. - 12. 14. (21일간)

#### 4. 설치장소

시설명	위치	세부설치장소	설치대수
군포시의회	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	건물 내부 및 외부 주차장	4대

#### 5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.12.14.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방법 : 우편, 전화, 팩스,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등

나. 제출기한 : 2021. 12. 14.까지

※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.

다. 제출내용 : 【붙임】 참조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

○ 주 소 :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(군포시의회)

○ 전 화 : 031-390-8714

○ 팩 스 : 031-392-4004

○ 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www.gunpocouncil.or.kr>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: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